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2. 21 선고 2016가합1013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민

담당변호사 정천수

피고1. B

2.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상

담당변호사 노창현

4.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이도훈

변론 종결2018. 11. 2.

판결 선고2018. 12. 21.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134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D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0. 6. 15. 접수 제15244호1)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3.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210,000,000원, 피고 E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06. 11. 2. 수원시 장안구 F건물 제4층 G호, H호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었다.

나. 피고 C(개명 전 이름 K)은 이 사건 건물에서 여성고객을 상대로 세신영업을 하던 자인데 2007. 2.

7.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대표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유치권 점유자인 피고 B이 유치권 합의가 됐을 시 100%인 1,125,000,000원을 피고 C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소유자인 L는 피고 C 등에게 '피고 B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할시 이의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서상에 피고 C은 '지급명령 확정시 각서를 반납하고 각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다. 피고 B은 2007. 2.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허위의 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L에 대한 1,40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과 이에 기한 유치권을 신고하고, 2007. 2. 12. L를 상대로 1,4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L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은 2009. 10. 21.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으려는 원고에게 "유치권과 관련하여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고 매수인(원고)의 각종 서류(계약서, 내역서 등) 요구시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와 M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0. 2. 24.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는 4/9 지분에 관하여, M은 5/9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0. 3. 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1/3 지분(이하 'N 상가'라 한다)을 19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3. 본 계약은 이 사건 경매 유치권자(피고 B/매수자)와 경락인(원고/매도자)간 체결한 유치권 합의서(법무법인 ○ 인증 2009-제3122호) 내용의 합의금 중 일부금으로 위 부동산을 대물로 지급하는 계약임

사. 또한 원고는 2010. 3. 1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이하 'P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2. 등기부등본상 실용자 30,000,000원과 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2011. 4. 30.까지)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에서 공제한다. 실금액 210,000,000원

3. 본 계약은 이 사건 경매 유치권자(피고 B/매수자)와 경락인(원고/매도자)간 체결한 유치권 합의서(법무법인 ○ 인증 2009-제31225호) 내용의 합의금 중 일부금으로 위 부동산을 대물

지급하는 계약임

아. 원고는 2010. 5. 28. 피고 B에게, N 상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3438호로 2010.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P 오피스텔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21906호로 2010.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피고 B은 2010. 6. 15. 피고 D에게 N 상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5244호로 2010.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차. 또한 피고 B은 2011. 4. 19. R에게 P 오피스텔을 23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카.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10. 7.경 아래 기재와 같이 유치권 합의에 따른 입금내역 및 합의를 작성하였다.

유치권 총 합의금 : 400,000,000원

상기 금액은 수원 F건물 4, 5층 사우나 사건번호 S 유치권 합의금으로 아래와 같이 입금받았음을 정산(확인)하고 합의하기로 한다.

1. 유치권 합의 계약금 : 40,000,000원(2009. 10. 20. 지급 간주)은 2003. 1. 7. 피고 B이 원고(T)로부터 차용하여 발생한 채무금으로 대체키로 하고 상호간 채권, 채무를 종결한다.
2. 330,000,000원 2010. 5. 28. N 상가: 190,000,000원, P 오피스텔(전세보증금 140,000,000원 별도임)= 실금액: 140,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물건을 소유권 이전한다.
3. 단, P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 특약상 은행대출금 30,000,000원을 매수인(피고 B)이 승계키로 하였으나, 원고(매도인)가 대출은행에 상환하기로 한다.
4. 위와 같이 유치권 합의와 상호간 채권, 채무를 모두 종결하고, 인감도장 날인하여 각자의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보관키로 한다.

타. 피고 B은 2011. 5.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의 유치권자인 피고 B은 경락자 원고 외 1인과의 유치권 합의에 따른 합의금 900,000,000원 전액을 지급받아 차후에 원고 외 1인에게 모든 문제 발생으로 피해시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파. 피고 B은 L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과 허위의 유치권을 이용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190,000,000원 상당의 N 상가 및 210,000,000원 상당의 P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58)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노7521)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시가 400,000,000원 상당의 N 상가와 P 오피스텔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59)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노8259)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0, 23, 24, 31호증, 을가 제5, 6, 27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유치권합의 포기각서의 약정은 피고 B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N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도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취소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분이 2016. 4. 25.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N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N 상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134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N 상가에 관한 피고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N 상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0. 6. 15. 접수 제152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 D은 원고가 피고 B의 기망에 따라 N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피고 B와 피고 C이 N 상가의 이전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의 제3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 D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N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의 제3자로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로 피고 D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55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5호증의 3, 4, 갑 제19호증의 7의 각 기재, 증인 U의 일부 증언, 증인 V의 증언, 피고 B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D은 피고 C의 올케인 U의 조카인 점, 피고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유치권에 관한 합의의 대가로 N 상가를 받은 것을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다만 명의만 피고 C의 부탁으로 피고 D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 B, D 사이의 N 상가 거래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는 않은 점, 피고 D은 피고 B에게 매매대금으로 13,000,000원을 지급한 반면,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피고 B이 피고 D에게 19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매매대금 13,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B은 낙찰자와의 유치권 합의가 이루어졌을시 그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당초의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그 요청에 따라 피고 D 앞으로 N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그대로 이전해 준 것이고, 다만 자신이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발생한 취·등록세, 소유권이전비용 등 제 비용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피고 D이 주장하는 N 상가의 매매대금 13,000,000원은 N 상가의 현황을 고려하더라도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인 점(N 상가 하자 관련 손해배상금을 매도인 측이 갖는 것을 감안하여 결국 41,000,000원에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시세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N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 작성시 피고 D은 참석하지 않았고 U이 피고 D을 대리하여 참석하였으며 피고 B과 피고 C도 그 자리에 동행한바, 그 과정에서 U은 피고 C을 통하여 당시 허위의 유치권에 관한 합의의 대가로 N 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U은 피고 D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N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피고 C 본인신문결과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N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악의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N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에 관하여 피고 D에게 대항할 수 있다.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P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P 오피스텔은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P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인 280,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0,000,000원을 공제한

210,000,000원이 P 오피스텔의 실질가치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R에게 P 오피스텔을 매도하였으므로, 기준이 되는 P 오피스텔의 가액은 그 매매대금 23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0,000,000원, P 오피스텔 취득세 6,246,850원, 등록세 6,720,000원, N 상가의 등록세 및 취득세 합계 9,307,540원, P 오피스텔의 재산세 437,890원, 원고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40,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 B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없다.

(2) 판단 (가) P 오피스텔의 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0. 3. 10. 피고 B에게 P 오피스텔을 2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P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이 280,792,000원인 사실, 피고 B이 R에게 P 오피스텔을 처분할 당시의 시세 또한 그 금액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P 오피스텔의 가액은 28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임대차보증금 공제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2, 을가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 10. 피고 B에게 P 오피스텔을 280,000,000원에 매도할 당시 P 오피스텔의 임차인 W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140,000,000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한 2010. 7.경 유치권 합의에 따른 입금내역 및 합의서에도 P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을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P 오피스텔의 실금액을 14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실제 피고 B이 2010. 6. 19. W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이 부담한 위 140,000,000원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원고가 직접 다른 유치권 점유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10. 3. 10.자 P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40,000,000원만을 기재한 것이므로, 40,000,000원만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0. 3. 10.자 P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0,000원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2.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 점유자인 X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P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40,000,000원에서 다른 유치권 점유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 B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다른 유치권 점유자의 점유를 풀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형사합의금 공제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13.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2016노7521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형사합의금 40,000,000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공제에 관하여

피고 B은 P 오피스텔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0,000,000원은 자신이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25, 27호증, 을가 제3,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0. 6. 15. P 오피스텔의 새 임차인 Y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도금 30,000,000원으로 채무자인 원고를 통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3. 1. 17. 피고 B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0. 7.경 피고 B와 사이에 그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는 대신 원고가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 B은 위 45,000,000원이 차용금이 아닌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을가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의하면, 결국 원고가 P 오피스텔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그 피담보채무 30,0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취·등록세 및 재산세 공제에 관하여

피고 B은 또한, N 상가 및 P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들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원고의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P 오피스텔의 취득세로 6,246,850원, 등록세로 6,720,000원, 재산세로 437,89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B이 P 오피스텔을 취득함으로써 인하여 소요된 부수비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본 것도 아니며, N 상가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P 오피스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세금 지출액들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000원(=P 오피스텔 가액 28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 형사합의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최종적으로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8. 9. 23.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E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2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행각서(갑 제5호증)는 피고 E

부분의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 E가 원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현정

판사장민석

판사강윤희

별지

1) 원고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제40794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가 명백하므로 정정하였다.